









**다. 기타 정보**

추가정보Methyl Ethyl Ketoxime (MEKO).이 물질이 습한 공기중에 점차노출됨으로MEKO를 생성함.MEKO에 고농도에서 노출된 수컷 설치류는 일생동안 간암을 발생함.그러나 사람에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함.아래의MEKO에 대한 상세정보를 정독하시오.  
 피부자극성;약한자극을 일으킴.피부를통해흡수될수있음.  
 눈자극성;심한자극을일으킴.  
 급성경구독성 ;LD50(rat)= 4ml/kg.  
 급성흡입독성; LC50(rat)= >4.8mg/l/4Hr  
 흡입독성;고농도에서마취행동을 보이고 혈액효과를 생성할수있음.  
 피부민감성;양성(기니아 피그)  
 신경독성;고도 복용은 신경행동적 기능에 잠재적이고 가역적인 변화를 일으킬수있음. 신경독성의 축적 증거는 감지되지않음.  
 발암성;쥐와 라트를 일생흡입연구(약2년) 시험에서 간암이 관찰되었음. 이런 암병변은 375ppm의MEKO농도의 수컷에 통계적으로 증가됨.현재로서 인간에 게는 불확실함.  
 돌연변이성;몇가지 비트로 비보 연구에서 돌연변이가 고려되지 않음.  
 기타 만성병 연구;MEKO 15,75,375ppm의 각 농도에서 쥐,라트의 암수에 각 농도에 상응한 코 통로에서 후각상피세포에 퇴행성 영향이 일어났음.  
 작업장노출기준 판매자 지침; 3ppm(TWA), 10ppm(STEL),    AIHA WEEL ; 10ppm(TWA)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구성성분	중	시험 결과
Methylethylketoxime(Impurity) (CAS 96-29-7)		
수생		
어류	LC50	멍텅구리 황어(학명 피메페일즈 프로멜라스) 777 - 914 mg/l, 96 시간
알록시실란 (CAS 영업기밀)		
수생		
갑각류	EC50	물벼룩(학명 다프니아 마그나 ) 90 mg/l, 48 hr
어류	LC50	Bluegill (Lepomis macrochirus) > 100 mg/l, 96 hr 멍텅구리 황어(학명 피메페일즈 프로멜라스) > 100 mg/l, 96 hr 무지개송어 > 100 mg/l, 96 hr
조류	EbC50	녹색 조류(셀세나스트럼 카프리카르누툼) 5.5 mg/l, 72 hr
	ErC50	녹색 조류(셀세나스트럼 카프리카르누툼) 8.8 mg/l, 72 hr
이산화 티타늄 (CAS 13463-67-7)		
수생		
갑각류	EC50	물벼룩(학명 다프니아 마그나 ) > 1000 mg/l, 48 시간
어류	LC50	Mummichog (Fundulus heteroclitus) > 1000 mg/l, 96 시간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 유해성		수생생물에 유독함. [알록시실란]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유해성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알록시실란]
나. 잔류성 및 분해성		대기중 또는 수분중에서 쉽게 가수분해함. [알록시실란]
다. 생물 농축성		자료없음
라. 토양 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비 고형화 물질:소각처리. 소각설비는 소각시 발생하는 실리카 또는 미분체에 대한 적절한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작업자는 호흡기 같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여야한다.  
 고형화 물질:매물 또는 소각. 소각설비는 소각시 발생하는 실리카 또는 미분체에 대한 적절한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작업자는 호흡기 같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하여야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된 폐기물 처리업체에 연락할 것.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할 것.

**나. 폐기시 주의사항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빈 용기에 제품잔여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용기를 비운 후에도 제품표지의 경고사항을 따를 것.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 IATA

위험물로 규제되지 않음.

### 국제해상위험물 (IMDG)

위험물로 규제되지 않음.

## 15. 법적 규제현황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 허가대상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 관리대상 유해물질

이산화 티타늄 (CAS 13463-67-7)

####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규제되지 않음.

#### 작업환경 측정대상물질

규제되지 않음.

#### 노출기준설정물질

이산화 티타늄 (CAS 13463-67-7)

###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사고대비물질

규제되지 않음.

#### 취급금지물질

규제되지 않음.

#### 관찰물질

규제되지 않음.

#### 취급제한물질

규제되지 않음.

#### 유독물

규제되지 않음.

###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규제되지 않음.

###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폐유기용제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

규제되지 않음.

####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 특정대기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 목록현황

#### 국가 혹은 지역

한국

#### 목록명

한국 기준화학물질 목록 (ECL)

#### 목록 등재 (예/아니오)

예

\*예는 본 제품의 모든 구성 요소가 정부에 의해 규제되는 재고 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함을 나타냅니다

### 추가 정보

이 물질 안전 보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16. 그 밖의 참고사항

### 가. 자료의 출처

ACGIH

EPA: 데이터베이스 확보

NLM: 유해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US. IARC 화학물질인자의 노출기준 모노그래프 대한민국.

사고대비물질 (대통령령 제19203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위험물지정수량 (대통령령 제18406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1)

대한민국. 제조등의 금지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대한민국. 제조 또는 사용 허가대상 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 대한민국. 유독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1997-10

개정) 대한민국. 관찰 대상 화학물질 (TCCL 장관 명령 제 6조)

대한민국.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노동부고시 제1986-45 개정) 대한민국.

취급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 휘발성유기화합물 (환경부고시 제2001-36, 2001년 3월8일 개정) 대한민국. 취급제한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TCCL), 기존화학물질목록 (KECI)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기존화학물질목록 1997년이전목록

대한민국. 유독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0조) 대한민국.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4조)

### 나. 최초 작성일자

2013년 5월 31일

###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해당없음.

### 라. 기타

자료없음

### 책임의 한계

기재내용은 대표치이고,규격 및 보증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또한 추천된 산업안전보건조치나 취급방법은 통상의 취급사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용도,취급조건은 추천하는 사항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일반공업용도로 개발,제조 된 제품입니다.의료용 기타 특수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귀사에서 사전TEST하여,해당용도에 사용하는 것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사용 하십시오.의료용IMPLANT용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 다음 항목에 대해서 이 자료는 이전 버전에서 변경된 사항을 담고 있음 :

제품 및 회사 정보: 물리적 상태

조성 / 성분에 관한 정보: 성분 요약

물리 및 화학적 특성: 다중 특성

운송에 필요한 정보: Material Transportation Information

HazReg 자료: 환태평양

GHS: 확정 분류 결과